

## ◆ 22년 6월 고2 16~20번

###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물의 품종이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딸기의 품종에는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수확기가 이르고 키우기 쉬운 설향, 당도가 높고 기형 과실의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④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육성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발전을 ⑤ 도모하기 위하여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훼 등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다.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먼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⑥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크게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등이 있다. ‘신규성’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 과수나 임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되며, 그 이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일 경우에 인정된다. ‘구별성’은 기준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정된다.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자(在外者)\*가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품종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재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품종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보호 출원일로 인정한다.

품종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품종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한다.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한 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⑦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 여부는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하여 심사하므로 심사에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품종보호를 결정하게 되고,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설정된다.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인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으로, 그 이외의 식물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품종보호권자가 품종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 동안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품종실시료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⑧ 경과하거나,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 중일지라도 품종보호권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품종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 육성자: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여 이용 가치를 더 높인 사람.

\* 재외자: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국적의 사람.

\* 공보: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문서.

\* 실시: 보호품종의 종자나 수확물을 증식·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

###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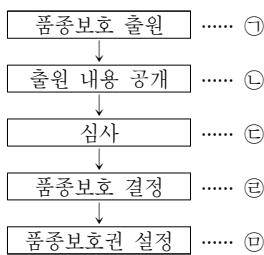
- ① 품종보호권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품종보호권에 대한 대립적인 입장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을 밝히고 그 법이 가진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④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품종보호권의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회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품종보호권의 존속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품종보호료를 납부 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된다.
- ②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의 대상은 열매의 수화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만 가능하다.
- ③ 품종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된다.
- ④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훼가 더 길다.
- ⑤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에 품종보호권을 설정하면 우리나라에 품종보호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그 권리가 인정된다.

### 18. 윗글을 바탕으로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한 절차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을 원하는 육성자는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 ② ②: 출원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어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③: 출원품종이 타 품종과 구별되는지, 반복 증식 후에도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지는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 ④ ④: 심사관이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에 품종보호가 결정된다.
- ⑤ ⑤: 품종보호가 결정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사례 1]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장미꽃의 품종 중 하나를 A로 개량하였다. ‘갑’은 A에 대한 최초의 품종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2020년 1월 1일에 출원하였고, 우리나라에는 2020년 5월 1일에 출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A의 품종보호권은 ‘갑’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 2] 포도나무의 품종 중 하나인 B는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하다. 우리나라에서 B의 품종보호권은 ‘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병’은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B를 재배하면서 연구하였는데, 당도도 높고 병충해에 강한 C로 개량하여 우리나라에 품종보호를 출원하였다.

- ① [사례 1]에서 ‘갑’은 2020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였지만, A의 품종보호 출원일은 2020년 1월 1일로 인정되겠군.
- ② [사례 2]에서 ‘병’의 연구로 개량된 C는 기존 품종인 B가 가진 단점이 보완된 품종이겠군.
- ③ [사례 2]에서 ‘병’은 B의 재배로 인한 품종실시료를 B의 품종보호권을 가진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사례 1]의 A와 [사례 2]의 B가 모두 신규성을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되었겠군.
- ⑤ 품종보호료를 앞으로도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사례 1]의 A가 [사례 2]의 B보다 더 길겠군.

### 20. ①~⑤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② ②: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
- ③ ③: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④ ④: 자세하게 조사하여 당락 따위를 결정함.
- ⑤ ⑤: 어떤 곳을 거쳐 지남.

## ◆ 10년 3월 고2 30~33번

###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상표는 소중한 자산 가치로 인정받고 있지만, 상표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상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상표권’과 관련한 상표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상표 보호와 관련한 이론은 크게 혼동 이론과 희석화 이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식별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근거해서 혼동 이론은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위 ‘짝퉁’에 해당하는 동종(同種) 상품의 경우, 상표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종류가 달라서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침해받지 않은 것이므로 그 행위를 ④ 규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가방이 큰 인기를 끌어 ‘아사달’이 유명상표가 되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아사달’이라는 상표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미지를 제고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사달’ 구두를 만들어 팔 경우, ‘아사달’ 구두는 ‘아사달’ 가방의 상표를 ⑥ 침해한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혼동 이론에서는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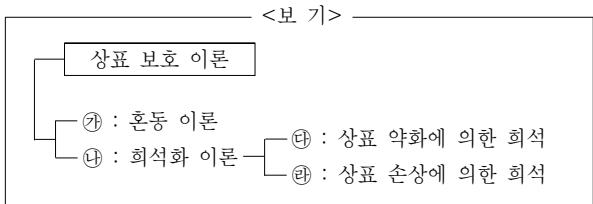
[A] 때문이다.

반면 희석화 이론에서는 비록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이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본다. 위의 경우에 ‘아사달’ 가방을 구입한 소비자는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아사달’ 구두를 구매한다. 이때 ‘아사달’ 구두의 품질이 형편없거나 조잡할 경우 ‘아사달’ 가방 자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고 상표 가치가 심각하게 ⑤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아사달’ 가방의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도 ④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희석화 이론은 유명 상표의 이미지, 광고 선전력, 고객 흡입력 등이 이종(異種) 상품에 흡수되어 상표의 식별력이 희석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희석화 현상은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오염시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상표 약화에 의한 희석’, 후자는 ‘상표 손상에 의한 희석’이라고 한다. ⑦ ‘상표 약화에 의한 희석’은 이종(異種) 상품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연상하게 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 손상에 의한 희석’은 타인이 유명 상표를 부적절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⑧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팽창하던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한 희석화 이론은, 초기에 혼동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상표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이론으로 평가 절하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면서 상표 보호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에 기초를 제공하여 부당한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30. <보기>의 ① ~ 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 상품의 출처보다 이미지를 중시한다.
- ② ⑦와 ④ :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취한다.
- ③ ⑤ : 상표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석의 기초가 되었다.
- ④ ⑦ :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 ⑤ ⑧ : 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 31.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사달’ 구두와 ‘아사달’ 가방은 상표에 차이가 나기
- ②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 가방의 판매를 신장시킬 수 있기
- ③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 가방의 고객 흡입력을 높이고 있기
- ④ ‘아사달’ 가방과 달리 ‘아사달’ 구두는 상표 보호 대상이 아니기
- ⑤ ‘아사달’ 구두와 ‘아사달’ 가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보지 않기

### 32. ⑦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명한 게임 ‘◆◆◆’을 과자 제품의 상표로 등록한 경우
- ② 유명 신발업체가 생산한 ‘○○○’을 다른 신발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③ 유명 음료수회사의 상표인 ‘●●●’을 안경점의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 ④ 유명 보석상점인 ‘▲▲▲’와 유사한 이름을 문방구의 상표로 무단 사용한 경우
- ⑤ 유명 전자회사인 ‘▼▼▼’와 유사한 인터넷쇼핑 사이트 ‘www.▼▼▼.com’를 만든 경우

### 33. ⑧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⑨ : 환경 보호를 위하여 비닐 봉투의 사용이 규제되어 왔다.
- ② ⑩ : 심한 포격으로 전파가 침해되어 통신이 두절되었다.
- ③ ⑪ : 그가 뜻 없이 던진 말로 인해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 ④ ⑫ : 김 부장을 배제하고 일을 하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 ⑤ ⑬ : 공주의 철없는 행동으로 왕의 위엄은 손상을 입었다.

---

## ◆ 16년 10월 고3 20~23번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의 표장(標章)을 말한다. 어떤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아 배타적 독점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표장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상표법 제6조 '상표 등록의 요건'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명칭이란 사과, 소금 등 통상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명칭이라 하더라도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안화된 경우, 또는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관용하는 상표란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지만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하여 동업자들이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용 표장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생산 방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記述的)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표장만으로는 그 상품의 출처가 식별될 수 없으며, 경쟁 업자도 자기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표장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가명이나 대도시명 등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 '박'이나 '이'와 같이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범인명 등 흔히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등도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품의 산지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단체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표장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통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이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을 출원<sup>①</sup>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그것은 이미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 업자들의 자유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부정 경쟁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상표 사용을 막아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이 있는데, 이는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다. 국기나 국제기관의 명칭과 같은 공공 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⑦ 먼저 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수요자에게 누구의 상품인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출원: 청원이나 원서를 냄.

## 20.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② 보통명칭 표장과 관용 표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③ 어떻게 하면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가?
- ④ 출원한 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가?
- ⑤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왜 등록을 받을 수 없는가?

## 21. 윗글에 근거할 때,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 ①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기관의 명칭과 같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② 이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자만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출원한다면 상표로 등록 받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이것은 동업자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에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상표로 등록받을 가능성성이 있겠군.
- ④ 이것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을 거야.
- ⑤ 이것은 상표법 제7조에 제시되어 있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 거야.

## 22.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할 때, ⑦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김 씨는 특허청에 산지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이 상표로 상품을 생산해 왔다는 자료와 함께 출원 전에 지역 신문에 자신의 상품이 소개되었던 기사,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 거절 소식이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근거 자료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심판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장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인용하였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 ⑦ )

- ①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청구인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②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후에는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③ 청구인의 상품이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④ 청구인의 상표가 처음에는 관용하는 상표였지만 현재 기술적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 ⑤ 청구인의 상표가 출원 전에 수요자들에게 청구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 23. 윗글의 ⑦과 <보기>의 ⑧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상표법 제53조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때 ⑧ 먼저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디자인권 등과 저촉<sup>⑨</sup>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은 해당 특허권·디자인권 등을 소유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자신의 등록 상표를 남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금지권은 유지되므로,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저촉: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됨.

- ① ⑦과 ⑧는 모두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의 강화한다.
- ② ⑦은 누군가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⑧은 그렇지 않다.
- ③ ⑦은 소유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⑧은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④ ⑦은 출원된 뒤부터 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⑧은 출원 이전이라도 해당 소유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⑤ ⑦은 그보다 늦게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⑧은 그와 저촉되는 등록 상표의 사용을 제한한다.

## ◆ 23년 4월 고3 4~9번

###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특허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한다.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 즉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 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구항 1]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은 철인 의자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된 의자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의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한 경우이고,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에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경우이다. 종속항은 독립항은 물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 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을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요건들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하여 심사할 때, 신규성은 선행 발명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고, 진보성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뿐만 아니라, 발명의 효과 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 개념이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아는 지식 수준에서 선행 발명을 토대로 해당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따라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치환하거나 선행 발명에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추더라도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는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리 형체가 없어서 모방과 도용이 쉬운 반면, 침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

문에 특히 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 역시 간접 침해로 규정하여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직접 침해란 특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실시<sup>\*</sup>하는 것이다.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확인하고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이 있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X+Y」라면, 확인 대상 발명에서 「X」나 「Y」만을 실시하거나 「X+Y」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X+Y」를 실시하거나 「X+Y+Z」를 실시한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한 채 부차적인 요소만 변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균등론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확인 대상 발명이 「X+Y」로 실시될 경우, 기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Y와 Y'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Y와 Y'를 균등한 것으로 ⑦ 보기 때문에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지할 경우 특허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물건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특허 발명이 물건인 경우, 해당 물건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지닌 완성품이 아닌 해당 물건의 구성품 일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해당 물건의 조립을 가능하게 하여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존 특허 발명이 방법인 경우, 그 방법을 실시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 실시: 물건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허 출원에 따른 혜택을, (나)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특허 출원인의 자격을, (나)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자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 ③ (가)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과정을, (나)는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는 특허 제도에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원칙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⑤ (가)는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나)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5. (가), (나)를 읽고, 특히 제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히 제도에서 특히 출원 명세서는 특허권 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특히 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히 제도를 통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받는다.
- ④ 특히 제도에서는 특허권이 모방과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보고 있다.
- ⑤ 특히 제도에서는 선행 발명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고 발명의 효과가 다르다면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 다음은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과 다음을 바탕으로 6번과 7번의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아래의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발명의 특허권자이다.

<특허 출원 명세서>

【발명의 명칭】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

【특허청구범위】 ..... ①

[청구항 1]

목재로 만들어진 몸체  
상기 몸체의 내부 중앙에 형성된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형상이 육각형인 연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의 한쪽 끝에 부착된 지우개를 포함하는 연필

6. 윗글을 바탕으로 학습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는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②는 특히 심사를 할 때 '갑'이 발명한 연필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③ ③에서 '갑'이 발명한 연필에 대한 보호 범위는 [청구항 1]보다 [청구항 3]이 더 넓다.
- ④ ④에서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면서 '갑'이 발명한 연필의 몸체의 특징을 한정하는 종속항이다.
- ⑤ ⑤에서 [청구항 3]은 [청구항 2]를 인용하면서 '갑'이 발명한 연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결합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7. 윗글을 읽은 학생이 학습지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갑'이 목재로 만들어진 연필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 '을', '병', '정'이 다음과 같은 발명을 하였다.

◦ '을'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

◦ '병'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며, 다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된 연필

◦ '정'의 발명: 목재로 만들어지며, 육각형 형상의 몸체의 내부 중앙에 흑심을 포함하는 연필에 있어서, 몸체의 한쪽 끝에 지우개가 부착되어 있고, 반대쪽에 뚜껑을 포함하는 연필

① '을'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구성 요소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하겠군.

② '을'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라고 할 수 없겠군.

③ '병'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일부 구성 요소가 '갑'의 발명의 해당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속하므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군.

④ '병'이 자신의 발명을 '갑'의 허가 없이 제품으로 생산하였을 때, 균등론의 원칙에 따르면 '갑'의 발명과 비교하여 원리나 효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침해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정'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을 때, 특히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을 인정받더라도, '갑'의 발명에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군.

8.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례 1] 소매업자 A는 자전거의 완성품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 완성품으로만 조립할 수 있도록 해당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였다.

[사례 2] 일반인 B가 특정 농약을 사용하여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권을 얻은 후, 농약 회사 C가 해충 제거 용도로만 사용되는 이 농약을 판매할 상품으로 생산하였다.

① [사례 1]에서 A가 자전거의 완성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례 1]에서 A의 행위는 최종적으로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사례 2]에서 C가 해당 농약을 생산은 하고 판매는 하지 못했다면 간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그대로 방지할 경우 특허권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⑤ [사례 2]에서 C의 행위는 해당 농약으로 B가 획득한 발명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9. 문맥상 의미가 ①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의 행동은 실수로 보고 감싸 주어야 한다.
- ② 그녀가 처한 사정을 보니 딱한 생각이 듈다.
- ③ 기회를 보고 천천히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 ④ 그 마을의 풍경은 사진으로 보니 실제만 못하다.
- ⑤ 아무리 급해도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기는 어렵다.

## ◆ 11년 3월 고1 48~50번

###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무방식주의란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절차나 방식 또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저작권을 이야기하면 흔히 자신이 만든 저작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떠올린다. 이는 저작권의 일부인 ⑦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개념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로,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법률에서는 저작재산권에 속하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등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른 일곱 가지 권리가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상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유권과 달리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의 원칙은 작품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존속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있다. 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이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표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하면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자 이름을 실명으로 표시할 것인가, 또는 예명이나 필명 등의 다른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 또는 표시하지 않을 것인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뜻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 표시는 저작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또,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처음 만든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이용자가 저작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다. 만약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도 저작인격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이 저작자에게만 속하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이 소멸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법률에서는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8 ⑦과 ⑤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은 권리의 발생과 관련하여 무방식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 ② ⑤은 가족에게는 넘겨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사람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이다.
- ③ ⑦에 속한 권리의 종류가 ⑤에 속한 권리의 종류보다 더 많다.
- ④ ⑦과 ⑤은 동일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소유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
- ⑤ ⑦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⑤은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 4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                         |      |
|-----------------------|----------------------------|-------------------------|------|
| 작가 홍길동의 생애            |                            |                         |      |
| 30세                   | 45세                        | 60세                     | 70세  |
| A 작품을<br>창작하여<br>발표함. | B 작품을<br>발표하여<br>문학상을 수상함. | 이후로<br>창작 활동을<br>하지 않음. | 사망함. |

- ① A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0세 때이다.
- ② A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년간이다.
- ③ B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70세 때이다.
- ④ A 작품에 비해 B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 ⑤ A 작품과 B 작품의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서로 15년 차이가 난다.

### 50 위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출판업자: 동일성유지권을 고려하면, 참고서에 논문의 자료를 수정하여 실을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겠어.
- ② 작곡가: 성명표시권을 고려하면, 내가 만든 음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굳이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겠어.
- ③ 번역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외국 소설을 번역할 때 원작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
- ④ 기자: 공표권을 고려하면, 발표되지 않은 미술 작품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을 때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겠어.
- ⑤ 학생: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친구가 가명으로 공개한 보고서를 이용할 때 친구의 설명을 밝히면 안 되겠어.

## ◆ 07년 7월 고3 41~44번

[41~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권이라 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범위’ 또는 ‘공정한 관행’에 관한 해석에 있다.

먼저 정당한 범위는,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작성하는 저작물에 인용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인용 부분 사이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창작하여 작성한 부분이 주(主)를 이루고, 그것에 담겨 있는 주제를 좀더 부각시키거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종(從)으로서 인용했을 때에 비로소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성립된다.

그리고 공정한 관행이란, 인용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이용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즉,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보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인용만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용되는 부분을 자기 저작물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도의 자료로 저작물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기나 다른 사람의 학설 또는 주장을 논평하거나 입증할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등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저작권법상 정당한 인용을 허용하는 것은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창작물을 이후에 등장할 저작자와 독자들이 가능한 한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인용이라 하더라도 출처 명시의 의무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이 법리의 해석뿐만 아니라 도리에도 맞는다. 만약 출처 명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도용(盜用)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인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인용 부호를 붙이거나 단락을 바꾸어 본문과는 다른 활자로 표시함으로써 인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상식이다.

41.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② 인용은 문화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 ③ 사회적 통념과 공정한 관행은 어떤 관계인가?
- ④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절차는 어떠한가?
- ⑤ 정당한 인용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42. 위 글의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몰라 알맞게 묶은 것은?

- <보기>
- ㄱ. 분석적 방법을 통해 대상의 요건을 제시한다.
  - ㄴ.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 ㄷ.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결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 ㄹ. 주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출판사에서 출간한 『나의 인생』은 미국 작가 A의 소설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했다. 출판사는 무명 작가인 B를 고용해 A의 작품과 흡사한 줄거리의 소설을 쓰게 하고, A의 소설에 실려 있는 사진을 삽화로 그려 넣어 책을 만들었다. A는 지난해 출판사와 출판사 대표를 고소했고, 출판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일보 -

- ① 출판사는 외국 책을 표절하여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해.
- ② A가 B를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범위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B에게는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군.
- ③ 출판사가 A의 소설을 차용했더라도 고용한 B의 실명을 밝혀 주었더라면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
- ④ 출판사가 A의 소설을 표절한 것은 정당한 인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롭게 그려 넣은 삽화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야.
- ⑤ B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소설을 썼다고 해도 A가 쓴 글이 주(主)가 되므로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44. 위 글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찾을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권의 개념을 설명한 사전
- ② 저작권의 종류와 목적을 다룬 법전
- ③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통계 자료
- ④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 사례
- ⑤ 저작권의 양도 방법과 보호 기간을 설명한 서적

한다. 그리고 원저작물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근대 소설을 현대 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것으로 2차적저작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소설을 원저작물로 하여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이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된다.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원저작물과는 다른 독립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있다.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독립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 (나)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⑧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유족 등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양도가 가능하다. 이때 저작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만약 누군가 원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 허락 없이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⑨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즉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단 2차적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보호를 받으며,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 to 침해하는 것으로, 원저작자는 자기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

#### ◆ 22년 9월 고1 16~21번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연히 기준의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또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소설을 기초로 하는 영화가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과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⑦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⑧ 2차적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⑨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 소설을 각색한 2차적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한다고 할 때,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제작하려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 1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분하고 있다.
- ② (가)는 예시를 활용하여 2차적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별하고 있다.
- ④ (나)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2차적저작물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 17.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사망 시 유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 ②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이 갖게 된다.
- ③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2차적저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18. ①~⑤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의 저작자와 ⑧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다.
- ② ⑨은 ⑦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으로 본다.
- ③ ⑦과 ⑨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⑨은 ⑦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 ⑤ ⑨을 작성할 때는 ⑨과 달리 ⑦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 19. (가)를 참고하여 ⑦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으므로
- ②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창작하였으므로
- ③ 원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 ④ 원저작물에 비해 예술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 ⑤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지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 20. (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편곡하였고 편곡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C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 사이트에 올렸다.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단,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저작권은 없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상황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 ② 영어 자막의 저작자는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군.
- ③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저작물로 볼 수 있겠군.
- ④ A는 C와 달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겠군.
- ⑤ B와 D는 모두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것이겠군.

#### 21. 문맥상 ⑦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류(分類)할
- ② 변별(辨別)할
- ③ 배분(配分)할
- ④ 판별(判別)할
- ⑤ 해석(解釋)할

## ◆ 21 경찰대 1차 20~23번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작물의 보호 요건인 창작성의 판단 역시 표현에만 적용된다. 비록 아이디어가 진부하다 할지라도 그 표현이 ⑦ 어떤 것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적 성격을 띤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러한 기준을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이라 한다. 저작권법에서 이렇게 표현과 아이디어를 구별하여 표현만 보호하는 이유는 ⑧ 어떤 아이디어를 특정 사회 구성원의 소유로 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공유되고 소통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먼저 착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자칫 헌법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의 의의가 있다.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착상(conception)이 특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저작물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소설을 예로 들자면, 개별적 사건에 관한 서술은 표현에 가깝겠지만 그 사건을 구성하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 등은 표현과 아이디어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즉,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에 따라 표현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아이디어에 가까워지고는 한다.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이 문제가 종종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창작자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선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표현으로 보호하는 범위를 너무 좁게 함으로써 현재의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거나, 반대로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함으로써 미래의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논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매우 제한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되기도 한다.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들 중 ⑨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느냐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먼저 ‘합체의 원칙’이다.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당초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오직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가 부인된다. 만일 그러한 표현마저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그와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권 내지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실상의 표준’이다. 처음 창작을 할 당시에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⑩ 어떤 표현 방법이 업계의 표준으로 굳어져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와 같은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후발 업자는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사실상의 표준은 사후적인 합체에 해당하므로 최초 창작자의 권리가 충

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끝으로 ‘필수 장면’이다. 합체의 원칙이 주로 기능적인 저작물에 적용된다면, 필수 장면은 예술적 저작물에 주로 적용된다. ⑪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만 하는 사건 또는 장면이나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과 같은 요소들은 설사 그것이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저작권을 적용한다면, 장래의 다른 창작자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및 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 웃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작권에 대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저작권의 개념과 그 유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저작권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 ④ 저작권에 관한 심화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저작권에 관해 쟁점이 된 사건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있다.

### 21. 웃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디어와 착상은 법적으로 서로 다르다.
- ②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④ 최초 창작자의 이익 보호는 특허법의 소관 사항이어서 저작권과는 무관하다.
- 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 22. 웃글을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유명 작가의 그림을 베껴 그리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미대생의 습작을 베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가치가 인정된 표현에만 저작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② 요리책을 복사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이지만 책에 소개된 요리 방법을 따라서 요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요리 방법이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가위바위보의 승패 규칙을 설명하는 출판물을 제작할 때 그 설명 방식이 기존 출판물의 것과 같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합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④ 시판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배열로 컴퓨터 자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의 표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⑤ 황량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두 총잡이의 결투 장면을 새로 제작하는 서부 영화에 삽입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데, 이는 ‘필수 장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23. ⑦~⑩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⑦      ② ⑧      ③ ⑨      ④ ⑩      ⑤ ⑪

## ◆ 14-6평 B형 21~23번

###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은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⑦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②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③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④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⑤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 22. ⑦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②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③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 ❶ :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❷ :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❶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❷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 ①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②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③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⑤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었겠군.

## ◆ 13년 3월 고3 19~21번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침해 사례에 맞추어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 법률 간의 중첩이나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개인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로 생각하여, 개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인사과 1팀에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는 경우, ‘인사과 1팀 영수 씨’라는 정보는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즉,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 역시 개인 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문, 홍채,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따라서 ‘인사과 1팀 영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⑦ 이를 개인 정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언제라도 특정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에 의해 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적 규제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해를 돋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ㄱ. A 상점에서는 적립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
- ㄴ. B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받아 여론 조사 기관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
- ㄷ. C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외부로 유출하여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위 사례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 ① ㄱ의 주민등록번호, ㄴ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ㄷ의 아이디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 ② ㄱ의 손님, ㄴ의 응답자, ㄷ의 고객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③ ㄱ의 정보 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ㄷ의 C 회사가 만약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 처리 담당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⑤ ㄴ과 ㄷ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21. 윗글로 보아, ⑦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②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③ 특정성과 특정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이는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사망자에 관한 정보나 단체 혹은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가령 휴대 전화 번호의 뒷자리 숫자를 접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전 등의 제도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할 때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역시 알려야 한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유 식별 정보는 여권 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이며, 민감 정보는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와 같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이때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의 항목을 밀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⑦ 익명 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익명 정보란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 정보는 시간이나 비용,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로, 익명 처리를 마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⑧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으로,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될 수 있다. 단,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개인정보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 ②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 ③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
- ④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 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익명 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 ② ㉡은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③ ㉠은 ㉡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④ ㉡은 ㉠과 달리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 ⑤ ㉠과 ㉡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헌법 제17조에서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해석된다. 이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려워,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 )하기 때문이다.

- ① 공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 ②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
- ③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되도록 허용
- ④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우선하여 보장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33. ③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학교 홈페이지에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게시된, '김○우'라는 교사의 이름
- ②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장(長)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휴대 전화 번호
- ③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서 추도사를 읽는 유족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
- ④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 ⑤ 생전에 모은 재산 전액을 기증한 '이부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부자 장학 재단'이라는 명칭

34. 윗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제시하는 다음 동의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 1. 수집 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 4-1. 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4-2.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 건강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1. 수집 항목 : 건강 정보  
⋮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가'에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하겠군.
- ② '가'의 4-2는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하겠군.
- ③ '가'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 ④ '나'의 1은 개인의 건강 정보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집 항목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겠군.
- ⑤ '나'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겠군.

## ◆ 24-9평 4~7번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④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⑤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A]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⑥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⑦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B]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⑧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⑨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다.
- ② 교통 이용 내역이 집적·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 ④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

### 5. [A], [B]의 입장에서 ⑧~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입장에서, ⑧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⑨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⑩라면, ⑪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B]의 입장에서, ⑫가 ⑬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⑭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⑮에서 ⑯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 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⑰는 ⑱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자산 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같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 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같은 B 은행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뒤, A 은행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 ‘체크 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 ①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 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 ②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 ③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 ④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 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7. 문맥상 ①, ②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 ②        |
|----------|----------|
| 용이(容易)해져 | 근거(根據)하여 |
| 유력(有力)해져 | 근거(根據)하여 |
| 용이(容易)해져 | 의탁(依託)하여 |
| 원활(圓滑)해져 | 의탁(依託)하여 |
| 유력(有力)해져 | 기초(基礎)하여 |

## ◆ 08 MDEET 언어주론 17~19번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격권은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도 목적 또는 사적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은 표현 자유권 내지 알 권리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해서 상품을 선전하거나 혹은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도 보도 목적이나 사적인 이용과 동일하게 다를 수는 없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면 상품 판매와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기타 주체성을 표시하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권리로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권리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한다. 다시 말해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성명이나 초상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적 측면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미국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소개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정당성을 긍정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되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연적 재산권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의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개인들이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한다. 이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는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 이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⑦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우연히 유명성을 얻은 자에 대해 지나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 반대론자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초상권이나 성명권과 같은 인격권의 영역에서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권에 대한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반대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찬반의 논란 속에서도,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통해 쌓아 온 명성으로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권리자가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퍼블리시티권 역시 인격권과 동일하게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이나 초상

을 보호 대상으로 하며, 성명이나 초상의 이용을 권리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퍼블리시티권의 혼합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인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퍼블리시티권은 생존 중에 성명, 초상 등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사후에도 존속되는 권리이다.
- ② 신문사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신문에 게재하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③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 ④ 퍼블리시티권은 양도, 상속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격을, 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을 지닌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확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18. ⑦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것은?

- ① 권리자가 상품을 후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신뢰가 보호될 것이다.
- ② 소비자들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어떤 후원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성향이 불식될 것이다.
- ③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아지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경우 이용자 수익의 사회 환원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 ④ 이용자는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권리자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권리자가 상품의 질이 높은 수준이 되도록 규제할 것이다.
- ⑤ 권리자는 이용자의 상품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 이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자와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퍼블리시티권 보호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의 명성은 우연보다는 본인의 의식적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명인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시간, 자금, 기술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 명성을 얻게 된다.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그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 ㄴ. 인격권은 성명, 초상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 초상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 ㄷ. 유명인의 성명, 초상을 이용한 표현 행위와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